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7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이상휘・박상웅・이헌승

최수진 • 김정재 • 김태호

김성원 · 임이자 · 신성범

박준태 • 박성훈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또한,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의 상당수가 전·현직 국토교통부 임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호주 등 또한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대통령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인과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의 상임위원 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대통령 소속으로</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u><삭 제></u>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u>1인</u> 을 포함한 12인	<u>1인과 상임위원 2인</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위</u>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u>구성한다</u> .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u>대통령이 임명 또는</u>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	③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로 보한다.</u>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통보) ① (현행과 같음)

2	제1호	항에	따른	항공・	철도종
사기	사 와	관계	인의	범위,	통보에
平	함되c	거야	할 사	항, 통	보시기,
통]	보방덕	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
통고	부령의	으로	정한디	₹.	

③ (생 략)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 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u>대통령</u>
<u>경</u>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대통령령</u>